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415
----------	-------

제출년월일 : 2024. 3. 12.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 안산시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일부 개정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 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 및 당선자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선거 시기: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임기 만료일 다음 회기의 집회일
  - 당선자 선출 방법: 최다선 의원 →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 → 연장자
-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약칭함(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안의 상정 시기 조정(안 제21조)
  - (현)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 (개정)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인 경우) 방법 개정(안 제22조, 제81조)
  - (현) 본회의 부의 → (개정) 의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이 허가
- 입법예고와 혼용하여 사용된 조례안 예고의 개념 및 방법 정비(안 제26조)
-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구분(안 제63조, 제69조, 제88조)
  - 본회의 : 개의, 의원, 심의 / 위원회 : 개회, 위원, 심사
- 문맥에 맞게 자구 수정 및 기타 용어의 정비(안 제19조, 제56조, 제61조 등)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생략

6. 현행조례 : 붙임 3

7. 관계법령 : 붙임 4

## 【붙임1】 개정 조례안

###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회의원” 을 “안산시의회의원”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총선거(이하 “총선거” )” 를 “총선거(이하 “지방선거” )” 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총선거” 를 “지방선거” 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총선거” 를 “지방선거” 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총선거” 를 “지방선거” 로,

“그 임기 만료일” 을 “만료일 다음 회기의 집회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실시” 를 “선거실시” 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총선거” 를 “지방선거”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고가 있는 경우(결위된 경우는 제외한다)” 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달하지” 를 “미달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이후 속개할 수 없어 당일 의 회의를 열지” 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운영위원회” 를 “의회운영위원회” 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제3항” 을 “제2항”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7일전” 을 “10일 전” 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입법예고”를 “조례안 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심사”를 “심의”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를 “6명 이내의”로,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5분자유발언”을 각각 “5분 자유발언”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6조제4항 본문 중 “공포”를 “공표”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을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여비규정”를 “「공무원 여비 규정」”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청취)”를 “(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  
언 청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속위원”을 “소속 위원”으로,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개의·회의중지와 산회”를 “개회·회의중지·산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의장”을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을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을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 의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84조제4항 중 “피심의원”을 “심사 대상 의원”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퇴심의원” 을 각각 “심사 대상 의원” 으로 한다.

제88조 중 “관계공무원” 을 “관계공무원 및” 으로, “의안심의” 를 “의안심의·심사” 로 한다.

제100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등록) <u>의회의원</u>(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당선이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등록) <u>안산시의회의원</u>----- ----- ----- -----.</p>
<p>제3조(의석배정) ① (생략) ② 지방의회의원 <u>총선거</u>(이하 “<u>총선거</u>”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다음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3조(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u>총선거</u>(이하 “<u>지방선거</u>” ----- ----- -----.</p>
<p>1.·2. (생략) 제4조(개·폐회식)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u>총선거</u> 후 최초 임시회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 제4조(개·폐회식) ① ----- ----- -----, ---- <u>지방선거</u> ---- ----- -----.</p>
<p>② (생략)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u>총선거</u> 후 처음 구성되는 당해 연도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1일까지 정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 제6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 ----- ----- -----. ----- <u>지방선거</u> ----- ----- -----.</p>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략)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생략)

⑥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

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결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

제7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지방선거 -----  
-----  
-----  
-----  
----- 만료일 다음 회기의 집회일 -----  
----- <단서 삭제>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선거실시 -----  
-----  
-----

제8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선거 -----  
-----  
-----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1조에 의한 개회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생략)

② 의장은 운영위원회와의 의사일정 협의가 끝난 후에 회기 전체 의사일정 중 그 일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의장이 결정한다.

③ (생략)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생략)

③ 의원이 제3항에 따른 서명 사실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의 효력은 철회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 경우 발의된 의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미달하거나 회의를 중지한 이후 속개할 수 없어 당일의 회의를 열지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회운영위원회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  
-----  
-----.

제21조(의안의 상정시기) ① 의안은 회  
기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  
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위  
원회가 예비 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 의제가 된 의안의 수정안, 수정  
예산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2조(의안의 회부)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  
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의원 청가 (5일 초과외 경우를 말한  
다) 동의의 건

9. ~ 20. (생략)

제26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  
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조례안의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 제출에 관  
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의 방법에 의  
한 공고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의안의 상정시기) ① -----  
----- 10일 전-----  
-----  
-----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안의 회부)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9. ~ 20. (현행과 같음)

제26조(조례안 예고) ① -----  
-----  
-----  
-----  
-----  
-----  
----- 예고-----  
-----

② 조례안 예고 -----  
-----  
-----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31조(안전심의) ① 본회의는 안전을 심사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9조(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의정 및 시정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 심의가 일부 또는 모두 종료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③ ----- 조례안 예고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31조(안전심의) ① -----  
심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 -----  
----- 6명  
이내의 -----  
-----  
----- "5분 자유발언" -----  
-----.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생략)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③ (생략)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한 사람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  
-----  
-----.

③ 5분 자유발언-----  
-----.

제51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  
-----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포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위원회의 심사) ① -----

-----  
----- 전문위원 -----  
-----  
-----  
-----.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⑥ (생략)

제63조(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청취)

위원회는 안전에 관하여 소속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 2.·3. (생략)
4. 출석하지 않은 의원의 성명
5. ~ 11. (생략)

② ~ ④ (생략)

제81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나 구금시에는 정부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공무원 여비 규정」 -----  
-----.

⑥ (현행과 같음)

제63조(타 위원회 소속 의원의 발언 청취)

----- 소속 위원 -----  
----- 위원 -----  
-----.

제69조(위원회 회의록) ① -----

-----  
-----.

1. 개회·회의중지·산회 -----

2.·3. (현행과 같음)

4. ----- 위원 -----

5.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1조(청가 및 결석) ① -----

-----  
-----  
-----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  
-----.

② ----- 의장 -----  
-----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③ (생략)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④ -----  
-----  
-----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⑤·⑥ (현행과 같음)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  
----- 심사 대상 의원-----.

② 심사 대상 의원-----  
-----  
-----  
-----.

제84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심사 대상 의원-----.

제85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  
----- 심사 대상 의원-----.

② ----- 심사 대상 의원-----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10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심사 대상 의원-----  
-----  
-----.

③ 심사 대상 의원-----  
-----  
-----.

제88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  
-----관계공무원 및 ---- 의안심의  
· 심사-----  
-----  
-----.

제10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  
-----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